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622
------	-----

2023.04.26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3월 29일, 장태용 의원 외 21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4.26.) 상정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장태용 의원)

1. 제안이유

- (가칭)서울시네마테크 개관(' 24.3월 예정) 이전에 영상산업 지원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원활하고 성공적인 시설 운영으로 서울특별시 영상문화 발전과 영상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.

- 서울시네마테크 시설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·운영과 시설의 수행 기능을 적시한 조항 신설(안 제9조)
- 나.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적시한 조항 신설(안 제10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 영상산업 지원시설(서울시네마테크)과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됨.

나.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배경 및 진행상황

- 영화계는 2002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독립·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시네마테크¹⁾인 ‘서울아트시네마’²⁾를 운영하고 있음.

1) 영화 관련 자료실 또는 실험 영화 극장(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)

-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시설을 임대 운영하면서 ‘서울아트시네마’의 이전이 반복³⁾되자 정부와 서울시에 전용시설의 건립을 요청함.
- ‘영상산업 정책 토론회’ (2013.3.22.)에서 ▶ 독립·예술영화 상영공간 부족 문제, ▶ 영상문화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, ▶ 공적 영상 전문 시설 확보 등을 위한 ‘시네마테크 건립’ 등이 제안됨.
- 서울시네마테크는 서울영상산업의 기반구축과 비상업영화(독립·고전·예술)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관을 갖춘 영상 전문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음.
- 부지조성과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, 국제지명 설계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고, 내년 3월 개관 이후에는 민간 위탁을 통해 지원시설을 운영할 예정임.
- 다만 2020년 2월 착공 이후 인접 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와 매립 폐기물 처리,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공기와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3월말 현재 공정률이 50%에 불과해 내년 3월 정상 개관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됨.

2) 운영주체 : (사)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

3) 아트선재센터(2002~2005.4.)→낙원상가 허리우드극장(2005.4.~2015.3.)→서울극장(2015.4.~2021.12.)→경향아트힐(2022.3.~현재)

<‘(가칭)서울시네마테크’ 건립 개요>

<input type="checkbox"/> 개요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기간 : 2015.7. ~ 2024.3.(개관 예정) ◦ 위 치 :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38 ◦ 건축규모 : 연면적 4,806㎡(지하3 ~ 지상10층, 대지 804.1㎡) ◦ 총사업비 : 26,482백만원(국비 161, 시비 26,321) ※ '23년 예산: 9,349백만원 ◦ 공간구성 : 상영관(3개소), 미디어센터, 아카이브, 전시실 등 									
층 별	지1~2층	1층	2~3층	4층	5~6층	7층	8층	9층	10층
용 도	상영관Ⅰ(215석) 영사실	카페 매표소	상영관Ⅱ(99석) 영사실	자료열람실 수장고	상영관Ⅲ(125석) 영사실	다지털교육실 대형강의실	기자재실 복합스튜디오	운영 사무실	영상 극장 (루프탑)
면적(㎡)	358	351	318/326	346	315/312	390	402	380	244
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경과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13. 3. : 영화산업 정책토론회 개최시 시네마테크 건립 제안·수용 ◦ 2013.10.~12. :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(숙명여대 산학협력단) ◦ 2015. 7. :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기본계획 수립 ◦ 2018. 9. :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준비위원회 구성 ◦ 2019.12.~2020.1. : 서울시네마테크 운영 관련 학술용역 및 공청회(2회) ◦ 2020. 2.~2024.2. : 착공 및 공사 추진 									

다. 주요 개정사항

(1)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근거 마련(안 제9조 신설)

- 개정안은 개관 예정인 영상산업 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)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▶ 영화 상영관 운영, ▶ 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, ▶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함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(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)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상산업 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	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영화 상영관 운영 2. 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 3.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-	---

- 영상산업의 기본 토대이지만 상업성 부족으로 개봉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·예술영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, 영상산업 관련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영상산업의 저변확대와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
-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명칭은 향후 공모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임.

(2) 영상산업 지원시설 운영위원회(안 제10조 신설)

- 개정안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‘지원시설 운영위원회’ (이하 ‘운영위원회’)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함.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0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.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

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
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⑥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
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원할 때

2. 질병,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
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

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
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
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
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
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
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
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
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
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-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
당연직 위원은 서울시 영상산업진흥부서의 장으로 하고(제2항), 지원
시설의 예산·결산,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을 심의·
자문하도록 함(제3항).
-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된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
방안을 결정함에 있어, 민·관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여
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,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.
- 다만, 수탁기관은 서울시와 대등한 자격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
별개의 법인이므로 조례를 통해 수탁기관에 운영위원회 설치와
서울시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 위촉을 강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
대한 법리검토가 요구됨.

- 이와 같은 논란을 피하고자 일부 수탁기관에서는 위수탁협약서에 수탁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, 수탁기관별로 협약서의 해당 내용이 상이하므로 지침 등을 통해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요지

가. 수정이유

- 현행 조례의 서울영상진흥위원회가 이미 “위원회” 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으나, 개정안에서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“위원회” 로 약칭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, “위촉해제” 를 “해촉” 으로 수정함.

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약칭을 삭제하고, “위촉해제” 를 “해촉” 으로 수정함(안 제10조).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22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4월 26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행 조례의 서울영상진흥위원회가 이미 “위원회” 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으나, 개정안에서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“위원회” 로 약칭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, “위촉해제” 를 “해촉” 으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약칭을 삭제하고, “위촉해제” 를 “해촉” 으로 수정함(안 제10조).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의 제목 “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” 을 “(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원시설운영위원회(이하 ” 위원회 “라 한다)” 를 “지원시설운영위원회” 로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, 제5항, 제8항, 제9항 중 “위원회” 를 각각 “지원시설운영위원회” 로, 같은 조 제6항 중 “위촉해제” 를 “해촉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<p>제10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.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인이 원할 때 2. 질병,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<p>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</p>	<p>제10조(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</p> <p>③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.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인이 원할 때 2. 질병,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<p>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<p>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</p>	<p>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⑧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⑨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</p>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)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상산업 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영화 상영관 운영
2. 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
3.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③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.

1.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- ⑤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1. 본인이 원할 때
 2. 질병,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
- 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⑧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⑨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9조(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)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상산업 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</u> 1. 영화 상영관 운영 2. 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 3.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
<p><신 설></p>	<p><u>제10조(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</u> <u>① 제12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지원시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</u> <u>③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.</u> 1.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.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<u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 <u>⑤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 <u>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 1. 본인이 원할 때 2. 질병,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<u>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</u></p>

<p>제9조(협력체제 구축) (생략)</p> <p>제10조(사무의 위탁) (생략)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⑧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⑨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</p> <p>제11조(협력체제 구축) (현행 제9조와 같음)</p> <p>제12조(사무의 위탁) (현행 제10조와 같음)</p> <p>제13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1조와 같음)</p>
--	---